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06
----------	------

2016년 9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2.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6. 8. 16.
3.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9월 5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2013. 8. 1. 조례 일부 개정 이후 조직 개편, 시설 설치 및 폐지 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현황 변동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가. 조직 개편에 따른 주관국(과) 변경(안 별표)
- 나. 시설의 성격 및 법정용어에 맞도록 사회복지시설 명칭 변경(안 별표)
- 다. 주관국(과) 소관 시설 설치, 폐지 등에 따른 변경(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34조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제36조, 제37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 제19조
- 정신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해당없음.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제외
-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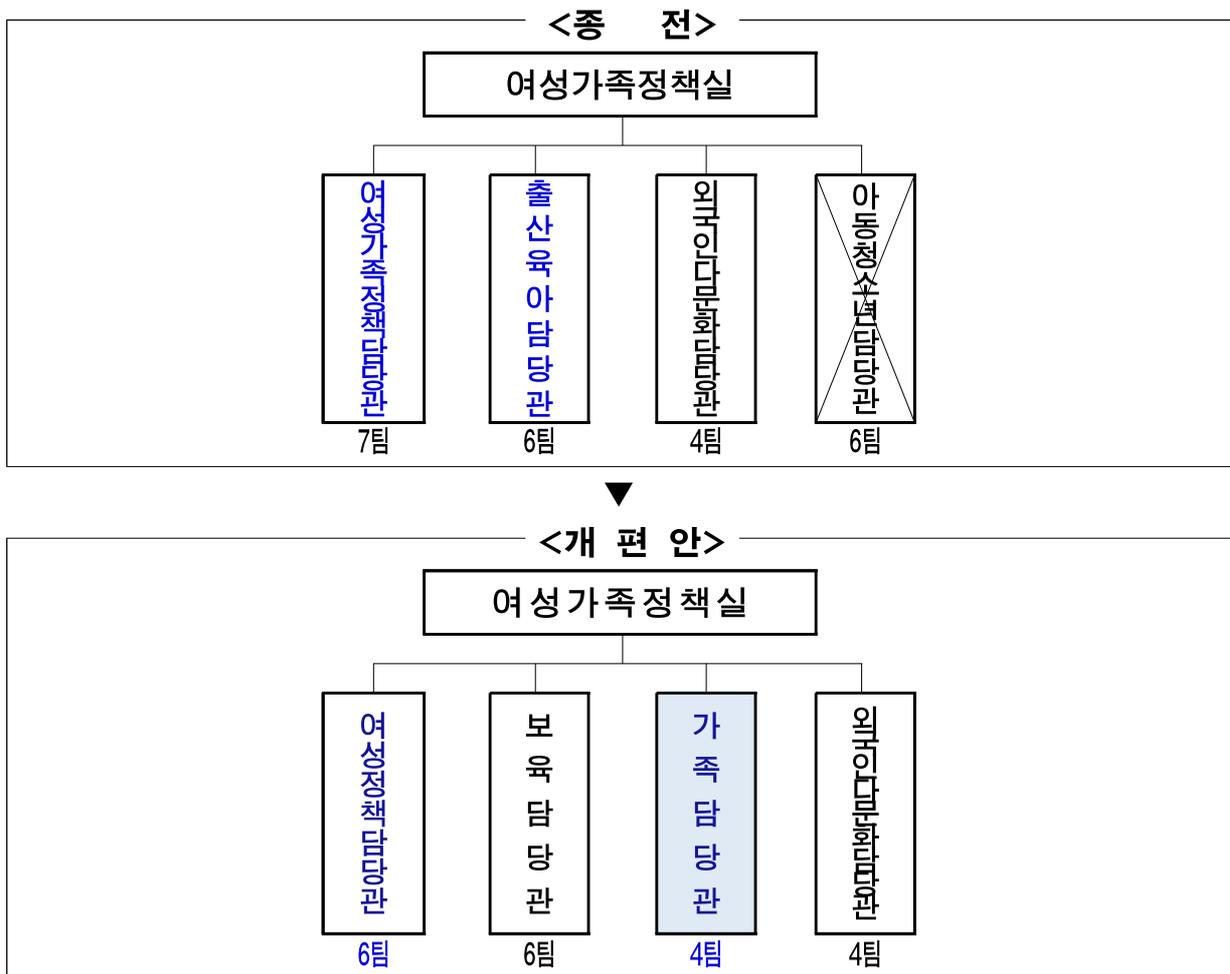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6.6.9. ~ 6.29)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2) 신·구조문대비표 : 생략
- (3) 비용추계 등 자료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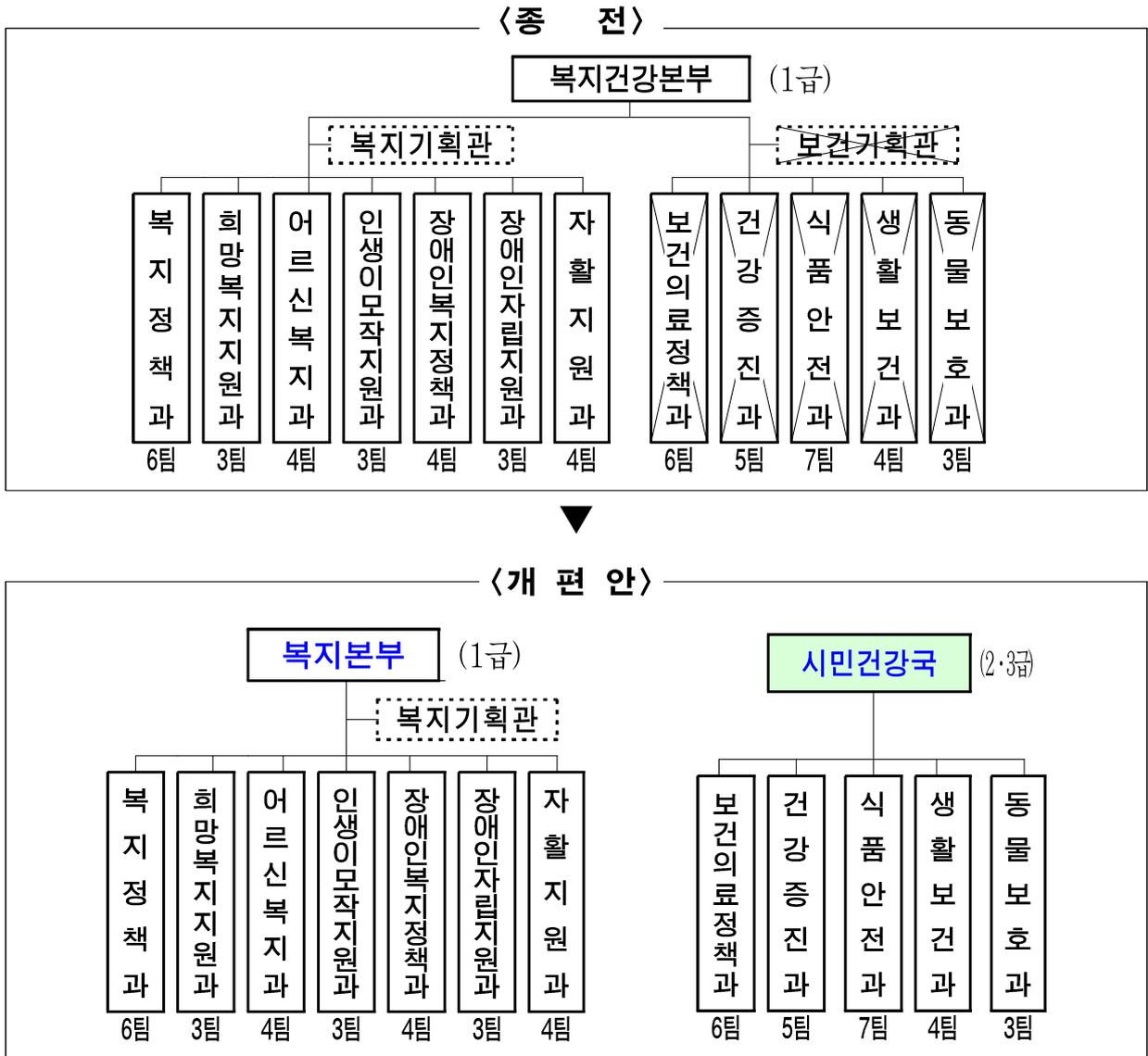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집행부의 민선6기 제1차 조직개편(2014.12.26.) 및 제2차 조직개편(2015.6.29.)에 따른 주관국(과)의 변경 사항과 그 밖에 시설 명칭 변경을 비롯한 소관별 시설의 설치·폐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제출되었음.
- 집행부는 민선 6기 제1차 조직개편을 통하여 가족지원·출산대책·아동복지 기능을 통합하여 가족지원 총괄부서로 ‘가족담당관’을 신설하고, 기존의 아동청소년담당관을 평생교육정책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이관한 바 있음.



- 집행부는 민선6기 제2차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기존의 복지건강본부(12과)를 ‘시민복지’와 ‘건강보건’ 분야별로 분리하여 복지본부(7과), 시민건강국(5과)으로 아래 표와 같이 전환하였음.



- 종전의 복지건강본부는 방대한 기구 규모(12개 구성)로 인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복지본부’ 신설을 통해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지원 정책 개발·추진에 집중하며, ‘시민건강국’ 분리신설로 공중보건 중심에서 시민 전체의 보편적

건강 보건 차원으로 확대하여 정책을 집중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음.

2 개정안의 주요 사항 검토

가. 법치주의 원리와 배치

-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되었지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복지시설 조례’)」 제3조 관련 사회복지시설 별표에는 조직 개편을 비롯한 시설 변경 현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사회복지시설 조례가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을 서울특별시장의 규칙 등 하위 규범으로 위임하지 않고, 조례의 일부인 별표상에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행정조직과 정책기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가능성 보장에 있다고 하겠음.
- 민주적 통제는 의회에 의한 정치적 통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 있는 바, 이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조직은 그에 대한 통제와 책임이 연쇄적 고리를 통해 의회에 연결될 수 있어야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민주적 통제의 원리’ 또는 ‘책임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조직법 원리는 투명성과 참여의 원리, 적법절차 원리 등 절차법상 기본원리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시설 조직을 조례상에 명시하고 있는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음.

- 그러나, 2014년 12월과 2015년 2월, 시장방침으로 추진된 조직개편안을 조례상에 일률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은 법제분야에 대한 보건복지분야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 태도와 의회 경시 태도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앞으로 조직의 신설·변경·폐지와 같은 조직 개편안이 지체없이 개별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사회복지시설 명칭의 통일성

- 집행부는 서울시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에 ‘시립’ 명칭을 추가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립’ 용어를 일률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서울시·서울·시립·단순 명칭으로 나뉘어져 있음.
-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회신했음.

- ① 시립시설의 명칭 부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시설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명칭을 정하는 바, 일관된 명칭부여가 되지 못함.
- ② 사전 협의 없이 ‘시립’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해당시설은 위탁협약서와 고유번호증의 사업자 명칭이 변경되고, 직인과 사회보험사업장 명칭 등도 변경하여야 함.
- ④ 시설의 특성(학대, 정신질환자 시설 등)에 따라 주택가 등에 위치하는 경우 시립표시를 하기 곤란함.

- 그러나 시설의 명칭에는 기본적으로 시설 설립 주체,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 등을 쉽게 추론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야 하며, 시립 시설로써 공신력 확보와 지역주민의 평가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집행부의 회신내용은 행정적 편의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바, 사회복지시설 명칭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결 론

- 조직변경과 같은 주요 정책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부칙을 통해 일괄 개정이 가능한 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며, 성문(成文) 조례의 특성상, 빈번한 조례 개정 절차가 곤란하더라도 시장의 전속 권한인 조직 및 인사 관련 조례 제출권을 장기간 방치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법제 분야에 대한 엄정한 근무 기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시민이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주체와 운영상 책임 주체 및 기능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을 일률적으로 통일하여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06
----------	------

제출년월일 : 2016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2013. 8. 1. 조례 일부 개정 이후 조직 개편, 시설 설치 및 폐지 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현황 변동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가. 조직 개편에 따른 주관국(과) 변경
- 나. 시설의 성격 및 법정용어에 맞도록 사회복지시설 명칭 변경
- 다. 주관국(과) 소관 시설 설치, 폐지 등에 따른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34조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제36조, 제37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 제19조
- 정신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제외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6.9. ~ 6.29)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 붙임

(3) 비용추계 등 자료 : 별도 붙임

※ 작성자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시설법인팀 박영용 (☎ 2133-7327)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제3조 관련)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시립여성보호센터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 시립영보지애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
	◦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비공개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 및 자립지원
	◦ 서울이주여성디딤터	금천구 독산로50길 23 (시흥동)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
	◦ 마리공동체	비공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등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대문구 답십로69길 106 (장안동)	보호대상 아동 상담·치료·보호
	◦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연두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구로구 가마산로 272, 2층·3층 (구로동)	한부모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대안학교 운영 등
	◦ 학대피해아동 쉼터(관악)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치유 및 보호
	◦ 학대피해아동 쉼터(중랑)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치유 및 보호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목로 5 (신정동)	주민복지 프로그램운영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로 199 (고덕동)	저소득 어르신보호
	◦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동일로 250길 44-142 (상계동)	"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성동구 마장로 23길 12 (홍익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마포구 월드컵로 36길 15 (성산동)	"
	◦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송파구 백계고분로 32길 35 (삼전동)	"
	◦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산본동)	"
	◦ 시립영보노인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노원구 섬밭로 313 (중계동)	"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랑구 양원역로 38 (망우동)	"
	◦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동구 동남로71길 32-5 (명일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북구 삼양로92길 40 (수유동)	"
	◦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구 화곡로61길 85 (등촌동)	"
	◦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구 보라매로 35 (봉천동)	"
	◦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 군자로 88 (군자동)	"
	◦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구 새말로16길 7 (구로동)	"
	◦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시흥대로51길 93-32 (시흥동)	"
	◦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노원로16길 15 (하계동)	"
	◦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구 도당로2길 12-13 (쌍문동)	"
	◦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 제기로33길 25 (청량리동)	"
	◦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상도로11길 7 (대방동)	"
	◦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구 서강로 68 (창전동)	"
	◦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57 (천연동)	"
	◦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구 삼일대로 467 (경운동)	"
	◦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구 마조로 77 (마장동)	"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종암로15길 10 (종암동)	"
	◦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산구 독서당로11길 16 (한남동)	"
	◦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 연서로 415 (진관외동)	"
	◦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 검재로9길 45 (면목동)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중증장애인 보호
	◦ 시립서대문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서대문구 중가로4길 58-16 (홍은동)	중증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 시립중랑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중랑구 검재로61길 81 (망우동)	"
	◦ 행복플러스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성북구 화랑로 134 3층	중증장애인 일시보호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양천구 목동서로 33 (목동)	장애인생산품판매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서대문구 명지2길 14 (홍은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송파구 마천로 226 (마천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성북구 화랑로 134 1층	"	
	◦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	
	◦ 번동보호작업장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	
	◦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3프로농장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107번길 14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 98 (신대방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 고덕로 201 (고덕동)	"	
◦ 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2 (영등포동)	"	
◦ 시립상이군경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상이군경 복지프로그램 운영	
◦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상계동)	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뇌성마비인 재활치료 등	
◦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 98 (신대방동)	지적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남가좌동)	농아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 시립곰두리체육센터		송파구 오금로 363 (오금동)	장애인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시립은평의마을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구산동, 은평마을)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 시립양평쉼터	경기 양평군 용문면 화진로 264	"	
	◦ 시립24시간 게스트하우스	성동구 가람길 125 (송정동)	"	
	◦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용답동)	"	
	◦ 시립영등포보호현의집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영등포동2가)	"	
	◦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 (갈월동)	노숙인 상담, 시설인계, 보호	
	◦ 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합동)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시립영보정신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정신질환자 보호	
	◦ 시립은혜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	
	◦ 누리봄	광진구 용마산로 25길 10 (중곡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 새오름터	은평구 연서로 22길 4 (대조동)	"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늘푸른집 ◦이음 ◦동작아이존 	<p>도봉구 시루봉로 295-3 (도봉동)</p> <p>강동구 천호옛12길 24-15(성내동)</p> <p>동작구 국사봉길 109 (상도동)</p>	<p>"</p> <p>"</p> <p>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정서행동장애아동 치료)</p>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2013.8.1. 조례 일부 개정 이후 조직개편, 시설설치 및 폐지 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현황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사안임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박영용 (☎ 2133-7327)